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8. 10 선고 2016가합547911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주식회사 A

2. B

3. C

4. D

변론 종결 2017. 6. 29.

판결 선고 2017. 8. 10.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712,592원 및 그 중 273,875,901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2017. 2. 23.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8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피고 주식회사 A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3. 2. 접수 제90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가.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37,121,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은 원고에게 237,121,2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원고의 피고 C, D에 대한 나머지 각 청구를 기각한다.

6.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A,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1/5은 원고가, 4/5는 피고 C이 각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의 1/5은 원고가, 4/5는 피고 D가 각 부담한다.

7.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항, 제3항 및 피고 주식회사 A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10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74,712,592원 및 그 중 273,875,901원에 대하여 2016. 7. 18.부터 소장 부분 최종

송달일까지 연 10%, 그 다음날부터 사실심 변론 종결일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의 범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위 274,712,592원과 위 지연손해금 및 이 돈들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신용보증과 피고 주식회사 A의 대출

1) 원고는 2014. 11. 26.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주식회사 우리은행(이하 '우리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고 부담하게 될 채무를 보증금액 270,000,000원, 보증기한 2015. 11. 25.으로 정하여 보증하기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것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모든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제6조(사전구상)

① 본인에 대하여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생긴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신보로부터의 통지, 최고가 없더라도 신보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상환채무를 부담합니다.

4.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정보(이상 관련인정보 포함),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의 등록 사유가 발생한 때

제10조(상환범위)

① 신보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연대보증인은 즉시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환하기로 합니다.

1. 보증채무이행금액

2.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보증채무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신보가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손해금

3. 보증채무이행에 든 비용

4. 보증채무이행으로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에 든 비용

2) 피고 회사는 2014. 11. 27.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내용이 담긴 신용보증서를 우리은행에 제출하고(이 신용보증서에 의한 원고의 우리은행에 대한 신용보증을 '이 사건 신용보증'이라 한다) 우리은행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11. 25.로 정하여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았다.

3) 2015. 10. 26. 원고가 우리은행에 보증기한을 2016. 11. 25.로 연장하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고,

그에 따라 이 사건 대출의 변제기도 2016. 11. 25.로 변경되었다.

4) 피고 회사는 2016. 2. 1. 타기관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3. 29.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 연체로 부실처리되었다.

5) 우리은행은 원고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원고는 2016. 7. 18.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73,875,901원(이 사건 대출원금 중 270,000,000원 + 이자 중 3,875,901원)을 변제하였다. 원고가 위 273,875,901원 변제에 따른 구상채권 보전을 위하여 채권보전 비용으로 1,757,550원을 지출하였으나, 920,859원을 회수하여 회수하지 못한 잔액은 836,691원이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제10조 제1항 제2호와 관련하여 정한율은 연 10%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의 각 매매계약

1) 피고 회사는 2016. 2. 15. 피고 C와의 사이에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대금 46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6. 2. 15.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2016. 2. 26.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전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8. 24. 채권최고액 423,000,000원으로 하는 중소기업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2016. 2. 26. 2016. 2. 26.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2) 피고 회사 소유인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3. 2. 접수 제9017호로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29.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다.

다. 피고 B와 피고 D 사이의 매매계약

피고 B 소유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용인등기소 2016. 3. 4. 접수 제31319호로 피고 D 명의 소유권이전등기가 2016. 2. 17.자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경료되었다.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전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5. 10. 30. 채권최고액 600,000,000원으로 하는 동부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는데 위 소유권이전등기 경로 후 2016. 3. 7. 2016.

3. 4.자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말소되었다.

라. 피고 회사 및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

1) 피고 회사의 2016. 2.경 채무초과상태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460,000,000원	원고의 대위변제 전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70,000,000원 이상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	69,615,200원	기업은행 대출채무	645,848,361원
합계	529,615,200원	합계	915,848,361원

2) 피고 B의 2016. 2. 17. 채무초과상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	737,122,210원	원고의 대위변제 전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	270,000,000원 이상
당진시 E	190,400,000원	삼성생명 대출채무	13,000,000원
양주시 F	109,120,000원	우리카드 대출채무	1,667,000원
제주시 G에 있는 H리조트 제신관동 제4층 제417호에 관한 1/12지분	27,542,400원	기업은행 대출채무	245,402,000원1) 원고는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645,848,36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는 피고 B의 채무가 아닌 피고 회사의 채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장의 신용정보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하였다.
우리은행 대출채무	130,000,000원		
아주캐피탈 대출채무	43,354,000원		
국세청 동수원세무서	100,000,000원		
동부화재 대출채무	500,000,000원		
새마을금고 대출채무	5,000,000원		
	피고 C에 대한 채무	90,500,000원	
1,064,184,610원	1,398,923,000원 이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 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수원시 영통구의 과세정보 회신 결과, 한국신용정보원장의 신용정보조회 회신 결과,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우리은행에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273,875,901원을 변제한 2016. 7. 18. 피고 회사, B에 대하여 구상채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대하여는 위 연 10%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금이 가산되며, 원고는 위 구상채권 보전 비용으로 지출한 돈 중 미지급 된 836,691원도 지급받아야 하므로, 결국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74,712,592원(273,875,901원 + 836,691원) 및 그 중 273,875,901원에 대한 위 2016. 7. 18.부터 이 사건 소장이 위 피고들에게 송달된 2017. 2. 23.까지는 위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사해행위 취소 청구 등에 관한 판단

가. 피고 C에 대한 청구

1) 사해행위 취소권의 발생 가)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2다41915 판결 등 참조).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2016. 2. 29. 피고 C과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6. 2. 29.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기초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지목하는 이 사건 2016. 2. 15.자, 2016. 2. 29.자 각 매매계약 체결일 무렵에는 이미 우리은행과 피고 회사 사이에 원고의 구상금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각 대출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고, 그 전인 2016. 2. 1. 이미 피고 회사에 대하여 타기관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던 점, 피고

회사는 2016. 2. 15., 2016. 2. 29.로부터 약 2개월이 경과되지도 아니한 2016. 3. 29. 이 사건 대출금의 이자를 연체하여 부실처리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 잡아 원고가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할 것이고, 실제로 얼마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연체함에 따라 부실처리 되어 원고가 피고 회사 대신 변제를 함으로써 구상금 채권이 확정적으로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은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16. 2. 15. 및 2016. 2. 29.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바,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되고(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 54420 판결 참조), 다만 그 부동산의 매도 목적이 채무의 변제 또는 변제자력을 얻기 위한 것이고, 그 대금이 부당한 염가가 아니며, 실제 이를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거나 변제자력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와 통모하여 다른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가지고 변제를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83992 판결 등 참조),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여러 채권자 중 일부에게만 채무의 이행과 관련하여 그 채무의 본래 목적이 아닌 다른 채권 기타 적극재산을 양도하는 행위는,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채무 본지에 따른 변제를 하는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28045 판결,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다435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 회사가 적극재산 전부인 별지1, 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각 매도한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위 각 매매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C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 C은 이 사건 2016. 2. 15.자, 2016. 2. 29.자 각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고

회사가 최종 부실처리되리라는 사정을 전혀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 각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항변한다. 구체적으로 ① 피고 C이 맡은 업무는 피고 회사의 생산직 직원들을 관리하는 것이었을 뿐이고 ② 2014. 7.경부터 1년 동안, 2015. 9.경부터 1년 동안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며 ③ 회사의 기숙사로 이용되어 아내 및 4명의 자녀와 함께 살던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을 그와 같이 거주한지 2 ~ 3개월만에 피고 회사의 권유로 매수하게 된 것이고, ④ 이 사건 아파트를 시가인 460,000,000원 중 100,000,000원은 계약금으로, 나머지는 피고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변제하고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최고액 423,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는 방식으로 정상적으로 지급 및 결제하였으며 ⑤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B에 대한 대여금 채무 90,500,000원의 변제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는 피고 C의 주장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사실 및 사정에 비추어 이와 같은 피고 C의 주장만으로는 피고 C이 위 각 매매계약이 피고 회사의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1) 피고 B이 2004년경 이혼하기까지 피고 C과 동서지간이었던 사실, 피고 C은 2014. 5. 8. 피고 B에게 90,500,000원을 대여하여 준 사실, 피고 C이 2011. 11.경 피고 회사에 대리로 입사하여 피고 회사가 부실처리되기까지 근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피고 C은 피고 B과 긴밀한 관계였고, 피고 회사의 채무 등 재무상황에 대하여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피고 회사가 2016. 2. 1. 타기관 연체로 신용보증사고가 난 후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이 사건 2016. 2. 15.자, 2016. 2. 29.자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3)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는 피고 회사의 책임재산인데, 피고 B의 피고 C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전되었다.

2) 취소의 범위 가) 이 사건 2016. 2. 15.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가액 반환

(1)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2. 15.자 매매계약 체결 전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2. 26.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근저당권이 소멸한 경우 사해행위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불공평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사해행위 목적물인 부동산의 가액 중에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등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원고들이 구하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역시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로 제공되지 아니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 내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을 배상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갑 제10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016. 2. 15.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2017. 5. 12. 기준 매매가 중 일반평균가는 442,5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된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460,0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016. 2. 15.자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36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결국,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가액 중 공동담보가액은 82,500,000원(442,500,000 - 360,000,000)이 된다.

(3)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위 82,500,000원을 초과하므로,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5. 체결된 매매계약을 82,5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8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2016. 2. 29.자 매매계약의 취소 및 원물 반환

피고 회사와 피고 C 사이에 별지2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2016. 2. 2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에게 대전지방법원 당진등기소 2016. 3. 2. 접수 제9017호로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D에 대한 청구

1)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이 2016. 2. 17. 피고 D와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매도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2016. 2. 17.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의 위 구상금 채권이 사해행위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는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고, 피고 B이 이 사건 2016. 2. 17.자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 상태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피고 B이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에게 매도한 것은 그 재산을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것이고 그 매각대금이 상당하다는 등의 사정을 엿볼 수 없으므로,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며, 위에서 본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피고 B은 위 매매로 인하여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한층 더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채무자의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 D의 악의는 추정된다.

2)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2016. 2. 17.자 매매계약 체결 전에 경료되어 있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가 2016. 3. 6. 말소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이 사건 2016. 2. 17.자 매매계약의 목적물인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시가가 737,122,210원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의 가액도 같은 액수일 것으로 추인되며,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금융거래정보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2016. 2. 17.자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은 500,0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가액 중 공동담보가액은 237,121,210원(737,121,210 - 500,000,000)이 된다. 이 사건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피고 B이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돈은 위 237,121,210원을 초과한다. 그렇다면, 피고 B와 피고 D 사이에 별지3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17. 체결된 매매계약을 237,121,21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 C은 원고에게 237,121,210원 및 이에 대한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하는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회사 및 B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C 및 D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판사함종식

판사이소민

판사차윤제

별지

1) 원고는 이 법원의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 근거하여 645,848,361원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실조회 회신 결과에는 피고 B의 채무가 아닌 피고 회사의 채무만이 명시되어 있다. 한국신용정보원장의 신용정보조회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하였다.